주 문

1.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

가. 피고(반소원고)는 원고(반소피고)들에게 [redacted]을 인도하라.

나. 피고(반소원고)는 원고(반소피고)들로부터 30,000,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(반소피고)들에게 [redacted]점포를 인도하라.

다. 피고(반소원고)는 원고(반소피고) A에게 814,285원, 원고(반소피고) B, C에게 각 542,857원을 지급하고, [redacted].부터 위 가.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원고(반소피고) A에게 128,571원, 원고(반소피고) B, C에게 각 85,71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라. 원고(반소피고)들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(반소원고)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2. 소송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그중 30%는 원고(반소피고)들이, 나머지는 피고(반소원고)가 각 부담하고,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(반소원고)가 부담한다.

3. 제1의 가. 나. 다.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